

[별표 1의2] <신설 2008.9.18>

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(제14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	규 모
공공시설	관리사무소	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
	매 표 소	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이하
	탐방안내소	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
안 전 시 설		별도의 제한규모 없음
조 경 시 설		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
휴양 및 편익시설	야 영 장	부지면적 6천 제곱미터 이하
	휴 게 소	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
	전 망 대	부지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
	대 피 소	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
	공중화장실	부지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
교통 · 운송시설	도 로	2차로 이하, 폭 12미터 이하
	탐 방 로	폭 3미터 이하,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
	교 량	폭 12미터 이하
	궤도 · 삭도	2킬로미터 이하, 50인용 이하
	선 착 장	부지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
	헬 기 장	부지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
공원사업		공원구역 안 기존시설의 이전 · 철거 · 개수